

vol.41

September, 2020

모니터링 리포트

이슈포착

- 장애인의 삶에 국적은 없다.
: 박장우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국제개발협력사업 담당자
- 기업과 인권, 그리고 장애인 단체
: 박철혁 한국표준협회 수석연구원

포커스

- '열린'의 의미와 어울리지 않는 열린 관광지
'무장애'의 의미와 어울리는 서울 무장애 관광지
-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정책 모니터링 실태에 대한 소고





출처 : 위키피디아

남아프리카 코이코이(Khoikhoi)족 사라 바트만(Sarah Baartman)은 1789년에 태어났다. 흑인 여성이면서 지나치게 비대한 엉덩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1815년 12월 사망하기 전 6년 동안 네덜란드인의 노예, 영국 프리 쇼(freak show)의 블랙비너스, 프랑스 동물조련사 소유물, 파리 클럽 매춘부로 살았다. 사진은 그녀가 사망 후 해부가 되어 박제된 형태로 두개골, 생식기, 뇌와 함께 1974년까지 파리 인류박물관에 전시되었던 모습이다. 해부와 전시는 그녀가 인간이 아닌 단지 우수한 수준의 유인원이란 인식에서 시작되었고, 나중에는 인간의 잔혹성과 노예제도가 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증언이 전시의 이유였다. 유럽인들은 흑인·여성·장애의 조합을 유난히 큰 엉덩이를 가진 장애 유인원 암컷으로 취급한 것이다. 1994년 빌슨 만델라 대통령이 그녀 유골의 귀환을 프랑스에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2002년이 되어서야 유해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Contents

2020 가을 | Autumn

- 02 편집자 편지
인권 논쟁
- 04 이슈포착 1
장애인의 삶에 국적은 없다.
장애인 당사자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필요성과 의미
- 12 이슈포착 2
기업과 인권, 그리고 장애인 단체
- 28 포커스 1
'열린'의 의미와 어울리지 않는 열린 관광지
'무장애'의 의미와 어울리는 서울 무장애 관광지
- 40 포커스 2
모니터링 원칙과 절차 준수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정책 모니터링 실태에 대한 소고
- 44 영화평
장애의 효용
: 엠마 왓슨 주연의 SF영화 <더 서클>
- 50 포럼은 지금

발행인 이권희
 편집인 김응구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이앤씨드림타워1303호(우)07255
 Tel 02) 833-3097
 Fax 02) 833-3093
 홈페이지 <http://www.ableinfo.co.kr>
 이메일 ablecenter@hanmail.net
 디자인 한빛인쇄 051) 515-1239

인권 논쟁

인권은 늘 그래왔고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인격권 보장을 위한 혐오표현 규제 Vs. 표현의 자유, 생명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코로나-19 방역정책 Vs. 사생활 보호가 그렇습니다. 북한 인민의 자유권 보장을 위한 대북제재 Vs. 북한 인민의 사회권 보호, 평화를 위한 전쟁 Vs. 안전 및 생명권, 사회권 보장을 위한 개발 Vs. 환경파괴 및 노동권 제한은 매우 익숙하기까지 합니다. 자유권과 자유권이 대립하고, 사회권과 자유권이 맞섭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립관계가 아니라 자유권과 사회권은 분리되지 않고 늘 복합하게 얽힌 상호 의존적 관계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로 코로나-19 발생은 선주민 권리와 환경권 침해의 결과이고, 그 여파는 경제활동 위축, 실업대란, 금융시장 불안, 쓰레기 대란 등의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덕분에 야생동물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대기환경은 개선되기도 합니다. 모니터링리포트 41호 내용들도 논쟁적 관점에서 들여다보시면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올해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호치민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및 동료상담을 주제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슈포착1>은 장애인단체의 관련활동을 소개하고,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류 공동의 참여 관점에서 국제협력사업을 조망하고 있습니다. 기고해주신 박장우님은 현재 포럼의 국제협력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4년간 베트남 장애인 이동지원사업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슈포착2>는 장애인단체에 낯설지만 앞으로 관심을 가져볼만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업과 인권(Business & Human Rights) 이슈입니다. 포럼은 장애인 관련 공공기관의 인권영향평가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기업 활동이 장애인 등 이해관계자 삶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개선조치 이행을 제안하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한국표준협회 박철혁 수석연구원님이 공공기관의 인권영향평가 경험을 살려 기고해주셨습니다.

<포커스1>은 지난 호에 이어 장애인관광환경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는 한지운 연구원님이 관광 및 여행과정에서 시·청각 장애인이 직면하고 있는 취약한 정보접근 환경을 중심으로 올해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포커스2>는 장애인정책모니터링 실태를 짚어보고 절차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정책모니터링 현장 지원을 담당했던 한동국 선임연구원님이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소고형식으로 기고해주셨습니다. 현재는 시흥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단테' 소장님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류미레 독립영화 감독님이 기고해주신 <영화평>은 자본 축적과정은 물론 사회적 약자 인권 증진을 위한 모금활동 과정에서 흔히 활용되고 있는 장애, 빈곤, 아동 등에 대한 이미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추석연휴를 지나 가을을 앞두고 있습니다. 독감예방접종 이야기가 한창입니다. 곧 다가올 쌀쌀한 날씨에 독자님과 가족 분들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020년 10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김용구

장애인의 삶에 국적은 없다.

장애인 당사자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필요성과 의미

박장우 한국장애인인권포럼 국제개발협력사업 담당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경제 선진국의 지위를 획득한 ‘국가’가 있다. 한국은 1950년대 이후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유일한 국가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회원국으로 활발하게 해외 원조 사업을 하는 선진국의 하나가 되었다. 6.25전쟁 직후인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6달러에 불과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고,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평가로 당시 한국의 미래를 진단했다. 당시 한국에는 서구 선진국의 원조단체들이 들어와 많은 활동을 했고, 그 흔적은 지금도 한국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 원조를 통해 투입된 자원들은 기적과도 같은 경제적 성공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은 1인당 국민 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선 명실상부한 선진국이고,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의 대국이다. 한국의 경제적 성공 요인을 외부에서만 찾을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선진국들의 원조는 충분히 숙고해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한국의 성공은 국제사회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의미를 보여주는 상징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성과를 증명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지는 이미지가 있다. 가난한, 빈곤한, 열등한 국가에 대해 행하는 선진국의 ‘시혜적 원조’, 혹은 ‘기부’다. 보통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단어는 ‘원조’이거나 빈국을 위한 ‘무상원조’일 것이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은 그렇게 단순한 ‘좋은 일’이 아니다. 균형 있는 발전과 성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구촌 전체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현 시대에 통용되는 ‘국제개발협력’의 정확한 의미다. 사회의 책임보다 개인의 책임을 더욱 중요시하는 관점에서는 복지에 대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사회적 개입이라고 비판한다. 경제적 지원이 빈곤층의 ‘무임승차’를 강화하고 복지정책과 사회적 우대가 ‘역차별’을 조장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복지를 비롯한 공공정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회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구조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것에 있다. 사회적 갈등의 대부분은 ‘격차’에서 발생하고, ‘갈등’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격차’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모두가 함께 조금씩 더 나아져야 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격차를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은 범위를 ‘지구촌’으로 확대해도 변하지 않는다. 부자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를 돕는 ‘선행’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협력과 연대’의 수단으로서 ‘국제개발협력’의 의미를 인식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한국의 성공이 새로운 ‘부자 나라’가 하나 추가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성장과 번영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삶이 더 나아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더 나아가 세계 각국에 존재하는 장애인들의 삶은 왜 더 나아져야 하는가? 단순히 장애인들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인가? 아니다. 장애인의 삶이 더 나아질 때, 우리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지구촌에 존재하는 장애인들의 삶이 더 나아질 때, 지구촌 그 자체도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다.

사회는 성장의 정도나 사회적 자본의 축적 정도, 혹은 성숙도에 따라 사회적 계층이 세분화되거나 계층별 의제가 구체화 되는 경향이 있다. 1950년대 이후 1980년대 까지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문제는 주요한 사회적 의제가 아니었다. 장애인의 문제는 ‘빈곤층’의 의제에 묻혀있었고, 독립된 하나의 의제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런 경향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빈곤한 국가에 대한 ‘원조’라는 인식에 머물러 있을 때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지역적인 ‘빈민 구제’ 사업의 이미지를 가진다. 학교를 지어주고, 우물을 파주고,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우리가 익히 상상하는 그런 이미지의 사업들 말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장애에 대한 의제가 분화되고 구체화 되듯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한 사회에서 사회적 의제가 분화되는 계기는 ‘당사자의 성장’에 있다.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가,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하고 목소리를 내면서 사회적 의제는 분화되고, 다양해지며, 더욱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사회적 문제가 된다. 당사자의 성장이 ‘당사자의 연대’로 강화되면 그 변화는 가속화되고, 더

육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한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 운동도 이 과정을 밟아 오늘에 이르렀다. 당사자주의에 기초한 자립생활 운동은 한국 사회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초를 '시혜적 보호'에서 '사회적 공존'으로 변화시켰다. 이런 변화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는 지구라는 행성 단위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00년 이후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 확보된 당사자의 역량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 장애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는 한국 장애인들의 역량을 개발도상국의 장애인들과 나누고 연대하는 것은 단순히 한국 장애인들의 '착한 성품'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 시점, 한국의 많은 장애인단체들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직접적인 협력 사업도 있고, 학술 교류 사업도 활발하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의 분야부터 협력의 범위까지 전반적인 측면에서 의제는 두터워지고, 활동은 다양해지며, 협력은 구체화되고 있다. 기존에는 주로 빈곤한 국가의 빈곤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물질적 지원을 하는 획일화된 활동이 주를 이뤘다면, 2020년 현재에는 현지에서 장애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장애인의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있어, 선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2009년부터 동남아 지역의 장애인단체들과 교류사업을 시작하였고, 2012년부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파트너로 ODA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기존에 사업을 수행해 오던 큰 규모의 해외원조단체들에 비해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경험도 부족했고, 자원도 부족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모인 조직이었지만, 한국 사회를 넘어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전체적인 '역량'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당사자주의 조직들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었다. 정확하게 당사자들의 욕구를 반영시킬 필요가 있었다.

2012년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베트남 호치민에서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장애인에 대한 교육, 취업지원 등과 같은 전통적 의미의 '지원'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베트남 장애인들이 자생적으로 사회적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반 조성'을 위한 '이동권 확보'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한국과 베트남의 사회 구조나 문화가 상이했고, 장애 의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투입 가능한 자원도 너무

나 부족했다. 그러나 그것은 2000년대 이전 한국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어쩌면 한국 전쟁 이후 1950년대 한국에 왔던 선진국의 원조 단체 관계자들도 느꼈을 어려움일지도 모른다. 한국의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호치민에 방문해 현지의 장애인 당사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누었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찾아 2013년 현지의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 'Motobike Taxi' 사업이 시작되었다. '장애인 콜택시'와 유사한 사업으로 안전장치를 장착한 20여대의 3륜 오토바이로 호치민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4년간 연인원 3만여 명의 장애인이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했다.

현지에서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매체부터 일반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자 베트남 정부에서는 호치민에서 이용 가능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로 '베트남 정보시스템'을 통해 'Motobike Taxi' 사업을 안내하기도 했다. 호치민에서 시작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관심은 하노이, 다낭 등 베트남의 다른 도시들에도 전해졌고, 사업에 대한 문의 역시 이어졌다. 안타깝게도 KOICA의 지원이

베트남 활동지원사 모집 공고

THÔNG BÁO MỜI NỘP HỒ SƠ ỨNG TUYỂN NGƯỜI HỖ TRỢ CÁ NHÂN

Thứ tư, 08 tháng 07 2020 06:11

Chia sẻ:  

Ảnh minh họa DRD: Người hỗ trợ cá nhân hỗ trợ Người ngồi xe lăn xuống bậc tam cấp

Trung Tâm Khuyết Tật và Phát Triển (DRD) luôn nỗ lực thúc đẩy bình đẳng cơ hội cho Người khuyết tật (NKT), khuyến khích và tạo điều kiện để NKT tham gia vào tất cả các hoạt động giống như những thành viên khác của xã hội.

Được sự tài trợ của Diễn đàn về Quyền của Người khuyết tật tại Hàn Quốc (Able Forum), DRD thực hiện dự án Sống độc lập dành cho NKT tại Tp.HCM với mục tiêu cùng cộng đồng nâng cao chất lượng cuộc sống NKT.

Sống độc lập ở đây không có nghĩa là NKT phải cố gắng tự làm tất cả mọi việc hay sống một mình mà với sự hỗ trợ của Người trợ giúp cá nhân (PA), NKT có thể tự chọn lựa, tự quyết định và tự chịu trách nhiệm những việc mà họ cùng PA thực hiện. Từ đó, NKT có đủ tin để sống hòa nhập với cộng đồng hơn.

Nhằm tạo thêm cơ hội để NKT đang gặp nhiều khó khăn nhưng có khát vọng vươn lên trong cuộc sống, Trung tâm DRD mời các bạn thanh niên khuyết tật nộp hồ sơ để được xem xét và nhận hỗ trợ từ chương trình:

Chương trình Sống độc lập cần tuyển:

1. Vị trí: Người hỗ trợ cá nhân
2. Số lượng: 10 người hỗ trợ cá nhân
3. Sơ lược công việc:

끝나면서 현재는 ‘긴급 이동지원 서비스’로 축소되어 현지 장애인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당시 함께 사업을 수행했던 현재 장애인 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호치민 정부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한 사업을 제안하며, ‘사회적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호치민에서 진행된 장애인 이동지원 사업은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사회적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이 생소하기도 했고, 도시지역에서 ODA사업을 한다는 것도 이전에는 쉽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어쩌면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Motobike Taxi’ 사업을 기획하고 제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사자들의 욕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도전 이후 한국척수장애인협회를 비롯한 장애인단체들이 ODA사업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들의 ODA사업 참여는 장애인 분야에서의 ‘국제개발협력’을 다양화하고, 구체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올해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새로운 사업을 기획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이 동료상담을 통해 현재에서 장애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제안해 사업을 승인받은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고, 국내에서의 활동도 제한적이지만, 호치민 현지에서 10명의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동료상담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사업을 제안하면서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적 욕구를 어떻게 자극하고,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이동권, 사회참여의 확대 등... 장애인의 삶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과 한국이 아닌 다른 사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자극할 것인가. 만일 그들이 더 자주 밖으로 나올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혹은 활용해본 경험을 가진다면 그 욕구를 사회적으로 실현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사업은 한국의 재원으로 지원을 받는 호치민의 장애인 몇 명을 위해 기획된 것이 아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과 현지 장애인들과의 협력은 한국 장애인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상상력을 우리에게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장애인 당사자들이 한국 사회에 기여

한 바와 같이, 한국과 베트남의 장애인들이 함께 지구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단순히, '부자 나라'에서 '돈'을 써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순간의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주도하는 당사자들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국제적 연대의 틀을 만드는 것이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추구하는 '국제개발협력'의 의미이고, 그것을 위한 '사업'이다.

장애인의 삶에 국적은 없다. 모든 장애인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 그것이 한국을 넘어 지구촌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다.

베트남 활동지원사 교육



2020년 장애인 정책모니터링센터 사업

1 지역사회 정책모니터링사업

- 국회 / 예산 / 자치법규 -

2 CRPD 정책모니터링사업

- 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 모니터링 -

3 장애인 관광환경모니터링사업

4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사업

5 통합결과보고대회

기업과 인권, 그리고 장애인 단체

박철혁 한국표준협회 수석연구원

우리 일상은 국가정책과 무관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정치에 무관심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을 기업 활동과 연계해 사고하는 사람도 드문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국가정책과 기업 활동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적지 않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고도화되기 전에는 시민들은 국가권력에 저항했고, 1970년대 이후에는 기업 활동이 우리 일상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해오고 있습니다. 예로 장애인은 기업의 고용정책과 상품과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애 시민사회가 기업의 인권존중 경영에 관심을 갖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또한 소비자, 노동자, 투자자로서 기업 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기도 하고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입니다.

1.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UNGPs)

국제연합(UN)이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이행원칙>을 통해 기업 활동과 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원인과 책임을 분석하면서 내놓은 결론은 간단합니다. 국가가 법적 제도적 환경 조성을 통해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결론입니다. 가해 기업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입니다.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책임의 선두에 국가를 상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겠지요. 인권을 존중해야 할 기업의 책임이 두 번째 결론입니다. 기업 활동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 의무(Due Diligence)를 실행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세 부 내 용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	<국가의 보호의무(para.1~10)> •기업과 같은 제3자로부터 개인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 •관할권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인권존중 책임 이행에 대한 명확한 기대 표명 •기업이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회사법과 같은 기업관련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고 엄정하게 집행 •국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과 국가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추가적 조치 시행 •분쟁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심각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었거나 문제 해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공적 지원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나 조달과정의 인권침해를 예방 •투자조약을 체결하거나 다자 간 기구에 참여할 때에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이행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para.11~24)>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규범에 따라 인권을 존중 •기업 활동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 구축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 및 완화하기 위한 인권실사 및 실천·점검의무 이행 •이행결과 개선 조치는 기업 정책과 통합되어 실행되어야 하며, 실행 성과를 추적해 공개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소통 •전 과정에서 인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구제에 대한 접근(para.25~31)>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는 사법적, 행정적, 입법적,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수단을 통해서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시행 •국가인권기구는 국가기반의 비사법적 고충처리 절차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 •비사법적 고충처리 절차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절차의 운영이 정당해야 하며, 피해자가 접근 가능하고 처리 과정과 결과가 예측가능하며, 피해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형평에 맞고 당사자들에게 투명하게 운영 •고충처리 절차 이행 결과와 구제조치가 인권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이뤄지는 고충처리 절차는 참여와 화해에 기초

2. 국내 동향

우리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회원국의 지위와 의무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행원칙(UNGPs)을 국내에 이행하기 위한 노력은 오

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도입기, 제도화 시기, 정착 및 확산 시기로 나누어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도입 준비 (2008-2013)	제도화 전환 (2014-2016)	정착 및 확산 (2017-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 실태조사 및 한국형 가이드라인 적용방안 연구(2008) •인권경영 모범사례 연구 및 자가진단도구 개발(2009) •기업과 인권관련 국내 법·제도·정책·관행 개선에 관한 연구(2012)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2012) •인권경영 교재개발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 우수사례 평가지표 개발 연구(2014)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 권고(2014) •기업과 인권 국가행동계획 수립 연구(2015)/수립권고(2016) •기업과 인권 로드맵 수립 연구(2016)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권고(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 표준매뉴얼 개발 연구(2017)/매뉴얼 적용 권고(2018)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인권항목 신설(2017) •제3차 국가 인권 정책기본계획에 기업과 인권 Chapter 추가(2018) •정부부처 및 광역지자체 인권위 인권경영매뉴얼 적용 권고 수용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인권지표 신설(2019) •민간기업 인권경영 지침 수립 추진(법무부, 2019) •근로기준법 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신설(2018)/시행(2019)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인권위-법무부 업무 협약 체결(2020)

국내 제도화의 핵심은 공공기관경영평가에 인권성과를 포함한 것입니다. 즉, 인권경영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제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기관 인권경영을 지원하고 확산하기 위해 표준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 계	항 목	세 부 내 용
〈1단계〉 인권경영 체계구축	인권경영 추진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실행 제도 구축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교육과 훈련 실시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 •인권실태조사 •인권경영선언문에 대한 최고경영진 승인 •인권경영선언문 공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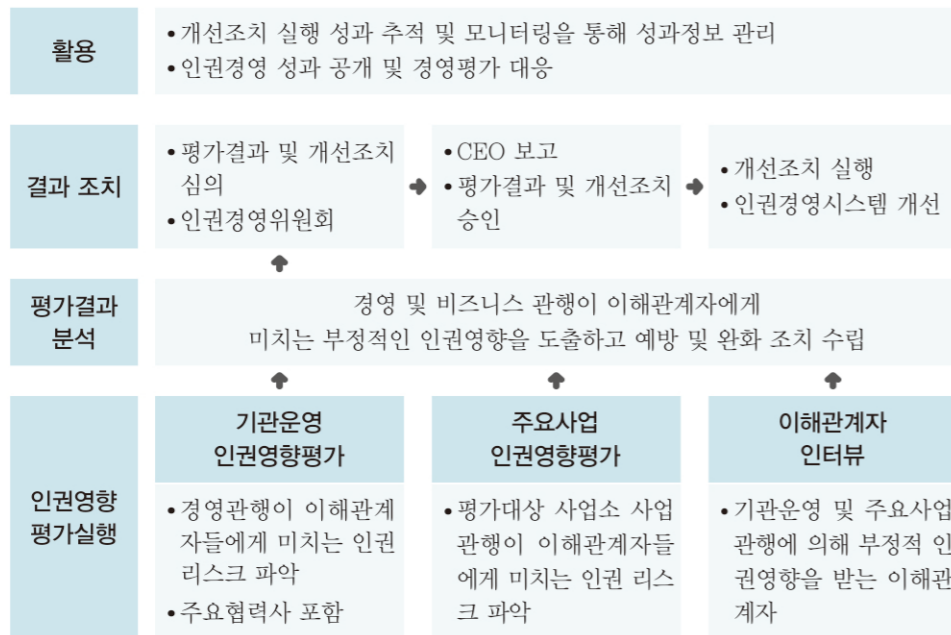
	기관 내 각 부서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내 소통채널(홈페이지, 방송, 사보, 인트라넷 등) •인쇄물 사업장 게시 •인권교육에 포함
	기관의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사업체와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지사, 자회사 및 협력사 •공급망, 에이전트 •지역 언어로 번역 제공
〈2단계〉 인권영향 평가 실시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계획 수립 •체크리스트 개발 및 개선 •대상 주요사업 선정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교육 •평가 시행 및 인권경영위원회 자문경청 •최고경영진 보고 및 공개
〈3단계〉 인권경영 실행·공개	인권경영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영향평가 결과 파악된 인권 리스크 분석 및 검토 •리스크 예방 및 완화 우선순위 선정 •개선조치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실행 및 성과 추적
	인권경영 전 과정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행성과 정보 체계적 관리(인권실태조사, 인권경영 체계구축, 인권영향평가, 개선조치 실행 등) •실행성과에 대한 이해관계자 소통 •실행성과보고서 정기적 공개
〈4단계〉 구제절차 제공	구제절차 연구와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내 운용 중인 고충처리 절차에 대한 효용성 평가 •우수사례 및 인권영향평가 결과 파악된 인권리스크 검토
	구제절차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제 기구 설치 및 전담자 지정 •구제 매뉴얼/지침 마련 •인권전문가 자문 경청 •구제절차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인권교육 및 훈련 제공
	구제절차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제 매뉴얼/지침에 의거 시행 •전문성, 객관성, 독립성, 접근성, 신뢰성 확보
	구제절차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제절차에 대한 정기적 평가와 개선

3. 인권경영의 핵심요소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이 인권침해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Due Diligence)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노력의 핵심적인 요소가 인권영향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 간 관련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구분	개념
인권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sponsibility of business enterprises to respect H.R. 국내 법률 및 국제사회에서 선언한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함으로써, 인권 침해 회피노력을 다하고 부정적 인권영향 발생 시 이를 다루는 기업 경영 활동
인권경영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System for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of business enterprises to respect H.R. 인권경영 이행 체계로 정책선언, 이행 시스템 구축과 실행, 실행성과를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것을 포함
인권실사 및 실천·점검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Due Diligence 기업의 인권침해 회피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정적 인권영향 파악, 예방 및 완화 조치 시행, 실행 성과 추적 및 공개 과정을 의미함 인권경영시스템 구축과 실행 성과를 기업의 인권실사 및 실천·점검 의무 이행 증거로 판단
인권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인권실사 및 실천·점검 의무 이행의 핵심 도구로 부정적 인권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 부정적 인권영향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도출하기 위해서 적절한 원칙과 절차 수행이 요구됨

인권경영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인권실사 및 실천·점검 의무(Due Diligence)를 도식화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인권영향평가가 그 중 핵심요소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권영향평가의 특징과 주요 요소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성	법적 리스크 대응	경쟁력 강화	평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과 인권 이슈가 국내·외 주요의제로 대두 기업의 민·형사상 책임 관련법·제도 수립 및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인권경영 제도화 우수 인재 확보 사업기회 증가 지속가능성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판 및 브랜드 이미지 관리 사업기회 확대, 우수 인재 확보 선순환 구조 정착

구분	개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 등과 구별 기업 리스크는 물론 권리보유자(HR holders)의 리스크를 동시에 다룸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인권규범을 평가 기준으로 설정 보편적이면서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
주요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절차와 결과의 정당성, 신뢰성 확보(이해관계자 참여) 평등과 비차별 원칙 접근성과 투명성 책무성(피해자 구제절차와 연계) 포괄성(모든 인권을 고려) 정책 피드백의 효율성(기업의 참여) 객관성, 전문성, 독립성(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참여)

4. 인권영향평가 실행 절차

위 표에서 언급된 인권영향평가 주요 요소를 고려한 평가의 개요 및 절차를 도식화해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례적인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기업 경영과 비즈니스 관행이 유발하거나 연루될 수 있는 잠재적인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 또는 완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단계] 준비

1단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영향평가 수행 주체 결정(자체 or 외부전문 기관) 인권영향평가 단독 실행 or 사회·환경 영향평가와 병행
2단계 사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괄적 인권목록(국제인권장전, ILO핵심협약) 관점에서 기업 정책 및 사업이 미치는 부정적인 인권영향 정보 수집 정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범위 설정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개발

3단계 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 참여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실시 •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4단계 결과적용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악된 부정적 인권영향 예방 및 완화 조치 마련 • 파악된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절차 시행 • 인권경영시스템 개선 및 보완
5단계 모니터링 및 성과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조치 실행 성과 모니터링 • 실행 성과 결과 보고 • 성과 공개 및 이해관계자 소통

가. 평가 주체 결정

구분	기업 자체 수행	외부 전문기관(전문가) 수행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차의 효율성 보장 • 경영시스템에 평가 결과 개선 조치 반영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 • 객관성 및 독립성 • 포괄성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성 부족 • 주관적 판단 개입 • 포괄적 시각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개별적 특성 이행 부족 • 권한/시행의 제약 • 추가 비용

나. 자체 수행 시 추가 고려 사항

관건	독립성 및 신뢰성 확보
	우선 고려사항
전담부서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기획 조직 참여 • 법무/감사 조직 참여 • 인사/노무 조직 참여 • 재정/계약 조직 참여 • 산하기관, 협력기관, 공급망 참여
복합부서 (TF)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관점과 의견 수렴용이 • 기업 운영 및 사업 전반 인권 이슈 통합용이 • 추진계획 단계에서 실질적인 정보 수집 가능

다. 인권영향평가 단독실행 or 통합실행(다른 영향평가와 병행) 여부 결정

구분	우선 고려사항
단독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 단체에서 선호 • 통합실행에 따른 인적·재정적 자원 부족 시 • 국제인권장전 및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기초해 포괄적 접근
통합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재적인 인권침해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이 요구되는 경우 • 인수·합병과 같이 사회·환경 영향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 제한된 인적·재정적 자원을 가진 중소기업의 경우 • 모든 평가에 인권요소를 포괄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기업 운영 및 사업에 '인권 주류화' 실현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전문가의 참여 • 부정적 인권영향에 노출된 이해관계자 파악 및 참여 보장

[2단계] 사전조사

가. 기업운영 및 사업 관련 부정적 인권영향 정보 수집

핵심 요소	인권영향 및 인권 목록
인권경영 체제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목록 포괄 • 공급망 등 이해관계자를 포괄하지 않을 시, 빈곤층 및 취약계층의 법 앞의 평등, 법의 평등한 보호, 차별 금지, 아동 권리, 선주민의 자기결정권, 소수자의 권리, 재산권, 소비자의 건강권 등에 대한 침해 잠재 •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담당 국가 법원에 의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고용상의 비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LO협약 100호, 111호 • 고용 관행상의 차별 요소를 파악하고, 특히 여성, 비정규직, 외국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금지 •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 전쟁의 선동과 인종적, 종교적 또는 민족적 증오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LO협약 87호, 98호 및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 • 노동권 •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 •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향유할 권리 •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정하고 가입할 권리와 파업권

강제노동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LO협약 29호, 105호 고려 및 공급망 모니터링 •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 •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이지 않고 강제노동에 동원되지 않을 권리 • 자기결정권
아동노동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LO협약 138호, 132호 고려 및 공급망 모니터링 • 아동 보호에 대한 권리 • 건강권 • 교육권
산업안전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내하청은 물론 공급망 사업장 안전 모니터링 • 장애인, 여성 모성보호 고려 • 생명권 •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 • 건강권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개발국가 사업장의 무장 보안 경비업체) 노동자나 지역사회 주민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대우와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 효과적인 구제수단에 접근할 권리, 자유로운 의견·정보·표현에 대한 권리,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구급자들의 권리 등 • 국내의 경우 시설보안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에 초점 • 계약 관행에 공급업체의 인권 성과 고려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신·축 과정의 현지주민 주거, 거주이전의 자유 및 재산권 고려 • 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 • 단독 및 타인과 공동의 지식재산권 • 자기결정권
환경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파괴 예방적 접근) 건강권 및 생명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 주거, 식량, 식수, 위생 등에 대한 영향 고려 • (자원의 과도한 사용) 생명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 식량, 식수 등에 대한 영향 고려 • 생명권 • 건강권 •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
고객 인권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권(물리적, 정보, 교육) • 사생활에 관한 권리 • 자기결정권

나. 평가범위 설정

구분	세부 내용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자 구성(또는 선정), 사전조사, 체크리스트 개발 및 개선, 대상 범위, 실행, 결과 분석 및 개선조치 도출 전 과정을 고려해 설정
대상 및 주기	<p><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분야(2년 전후) • 선별 분야(수시, 정책 및 주요 제도 변경 시) <p><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전후(인권영향의 파급력, 기업 고유의 중점 추진 사업, 이해관계자 포괄 정도, 지역 현안과의 관련 정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대상에 순차적 포함) • 수시(신규 사업 설계 및 기획 단계, 공사 실행 단계, 기존 사업의 확장 단계, 인수·합병 단계, 사업 종료 후 필요에 따라)
인권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인권장전 및 ILO핵심 이슈 포괄 • 국내 법령 및 사내 규정·제도를 넘어 국제인권규범을 기준으로 설정 • 인권 이슈 배치 및 깊이 설정에 사전조사 결과 반영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운영 및 사업 관련 부정적 인권영향에 처한 이해관계자 • 전문가 및 지역공동체 이해관계자 • 내부(부서, 구성원)

다. 체크리스트 개발 및 교육

구분	기업 운영	주요 사업
사전조사 결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핵심요소 및 관련 인권영향 • 기업 구성원 인권의식 수준 및 인권 현안 • 기업 인권경영 제도 구축 및 이행 현황 	
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매뉴얼(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활용 • 기업 운영 특성을 고려해 체크리스트 개선 및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 수행 절차 파악 • 절차별 이해관계자 파악 및 분류 • 이해관계자별 부정적 인권영향 파악 • 부정적 인권영향을 유발하는 사업관행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발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전문가 • 기업 인권경영 전담조직 및 유관부서 실무자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수렴 결과 반영해 초안 보완 및 개선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전담부서 및 유관부서장 및 실무자 대상 • 인권영향평가 취지와 목적, 수행 절차, 결과 활용 계획 • 참여 및 협력 요청
----	--

[3단계] 착수

가. 이해관계자 참여

구분	세부 내용
이행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 정보 및 물리적 접근성, 언어 및 문화적 요구 수용 • (포용성)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 등 취약집단의 의견 수용 • (투명성) 정보접근 보장, 피드백 결과 제공
우선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 참여 방안과 절차(접근성 포함) • 참여자(부정적 인권영향에 처한 이해관계자 및 권리 옹호자) • 정보관리(수렴할 정보, 피드백 절차 및 결과 제공)
이해관계자 확인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인권영향(긍정/부정)을 받는 이해관계자 • 이해관계자 대표성(또는 진정한 옹호자) 확인 • 긍정적 영향은 취약한 이들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파악
이해관계자별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자) 일반직 노동조합 외 별도직군, 비정규직 포함 • (지역사회) 지역사회 대표성, 진정한 옹호자 • (시민단체) 여성, 소수자 집단, 아동 등 다양성 확보 • (취약집단) 핵심적 요소, 피드백 메커니즘 개발
협의절차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들을 선별 • 핵심사안을 이해관계자별로 미리 검토해 적절한 피드백 도출 • 기업과 참가자들이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인권영향평가 전 과정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설명 • 다음단계에 계획에 대해 설명, 후속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 • 필요시 프로젝트 존속 기간 내 지속적으로 협의

나. 인권영향평가 실시

구분	세부 내용	
접근	지속적인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착수 및 확대, 운영상의 큰 변화, 인수합병 등
	미래예측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한 환경에서 다른 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 • 정치적 불안정으로 잠복하고 있는 갈등 요소 •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 • 사회적 관습이나 태도 • 직원의 행동과 태도

독자적/통합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전 기간에 걸쳐 지속적 요구(인권영향평가) • 사업 허가를 받기위한 수단으로 일회성 평가(인권영향평가외) •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평가할 경우 전문가 참여
우선순위/취약집단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 부정적 인권영향이 확인된 경우, 심각하거나 대응이 늦어질 경우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우선순위에 배치 • 인권위험 유형과 영향의 수, 인권영향의 상태(실재/잠재),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수 등 고려

영역	구분	세부 내용
영역	기업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위험 평가 • 기업 정책과 이행시스템 평가(인권주류화 관점) • 기업 인권규정과 충돌하는 내부규정 검토 • 인권경영시스템 이행 평가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침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사업부문 점검 • 해당 사업부문의 고유하거나 두드러진 인권영향 평가 • 해당 사업 관련 이니셔티브, 가이드라인, 보고서 참고
	독립적 기관의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평가 기관 보고서 및 시민단체 등에서 발간한 모니터링 보고서에 나타난 의견과 기대를 평가에 반영

사업 관계	구분	세부 내용
사업 관계	산업관계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적인 통제가능 여부 파악(계약, 소유권) • 인권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메커니즘 존재 여부
	계약업체 인권위험 및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및 상품의 공급 및 유통, 건설 수주처 등 기업을 대리하는 모든 계약 관계 점검
	하청업체 인권위험 및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인권정책과 기대하는 바가 전달되고 있는지 점검 • 공급망 관리와 참여 시스템의 모니터링 메커니즘 점검 • 완화 및 개선 행동계획이 공급망에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

[4단계] 결과적용 및 활용

가. 이해관계자 참여

구분	구분	세부 내용
구제 및 완화	행동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부정적 인권영향을 유발하거나 기여한 것을 인식한 경우 구제를 제공하거나 구제에 협력
	구제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적 인권영향 예방 및 완화 조치 • 구제절차 반영

구제 및 완화	개선 조치 개발 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관련자) 참여 보장 • 실행 가능성 • 수용 가능성(지역 문화와 전통)
	완화조치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지) 부정적인 인권영향 원인을 수정하거나 배제 • (완화)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피할 수 없을 때 • (복구) 부정적인 인권영향이 발생하기 전 상태로 되돌림 • (보상) 다른 완화조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나 충분하지 못할 때, 현금 또는 현물로 손실과 손해, 불편함을 보상
	경영진 보고 시 강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의 삶에 직접적·즉각적·심각하게 미치는 부정적 인권 영향 • 부정적인 영향의 구체적 내용 • 조치가 지연될 경우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 즉각적 주의와 모니터링을 요하는 부정적 인권영향 • 인권위험이 나타나는 사업 활동 주기 또는 단계 • 완화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공개 및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관련자) 참여와 계획 • 평가결과 도출된 주요 인권위험 • 완화 및 증진행동 방안과 비용, 혜택 •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 개요 • 경영시스템에 완화조치가 통합되는 방식
인권 경영 체계 구축 및 보완	구제절차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GPs 세 가지 축(보호, 존중, 구제)의 하나 • 비정부 기반의 고충처리 절차(28조-30조), 효과(31조)
	구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의 관점에서 고충을 접근 • 초기에 인권위험을 감지 못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 것 • 반대로 인권침해가 아닌 경우에도 이를 주장하는 경우
	효과성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성(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 접근가능성(장애가 있는 경우 적절한 조력 제공) • 예측가능성(확실하고도 공개된 절차, 이행감시 수단 제공) • 형평성(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공정한 대우와 참여) • 투명성(고충처리 절차 및 처리결과를 공개) • 구제결과가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과 합치 • 지속적인 학습자료 역할 제공 • 참여와 대화를 해결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접근

[5단계] 모니터링 및 성과보고

구분	세부 내용	
성과 추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화 및 개선조치 프로세스 • 경영활동 전반에 인권이슈 통합 여부 • 정책과 이행시스템 관련 내,외부 보고 여부 • 완화조치의 효과성
	효과성 전제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재적·잠재적인 인권 위협과 영향, 이해관계자 포함 • 개선된 정책과 프로세스가 어떻게 실행되고 목표를 성취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 • 재발된 고충내용과 이해관계자 • 법률준수와 외부 평가
성과 보고	완화 행동계획 및 권고사항 실행, 그리고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화행동계획 및 프로세스, 결과에 대한 정확하고도 체계적인 기록과 유지 • 설정한 핵심성과지표(KPIs)를 정기적으로 검토 • 완화행동계획 실행과정에 문제 발생 시, 수정 • 성과와 문제점을 경영진에 보고 • 지역사회 이해관계자가 이행감시에 참여하면 지역사회의 승인과 지원이 용이
	경영시스템에 인권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재정적 지원 • 인권정책, 시스템과 실행이 경영과정에 통합 •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제공 • 최상위 의사결정 수준에 인권이슈 보고
	각 부서 내 인권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관리자) 인권경영 관련 이니셔티브 감독 및 책임 배정 • (인사부서) 노동권, 다양성 및 비차별 이슈 담당 • (사업부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기업능력 배양, 사업 전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상시 검토 • (회계부서) 잠재적인 보상요구액, 완화 및 증진 행동계획, 이해관계자 소통, 구제절차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할당 • (소통부서) 사업 활동과 지역, 국가 및 국제수준의 규범변화에 대한 이해관계자 반응 모니터링 • (계약부서) 계약업체, 공급망 등에 확대할 수 있는 인권정책 개발 및 적용 모니터링

5. 맺으며

장애인 단체 활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기업의 재화 및 용역, 상품과 서비스,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

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안은 단체를 지원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의 책임으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나 인권침해 연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가의 기업정책은 기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유엔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UNGPs)에 따르면 인권경영 주체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가 해당됩니다. 영리, 비영리 가리지 않습니다. 법인, 개인사업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장애인단체도 포함됩니다. 염전농가, 거주시설, 병원, 지하철, 버스, 관광시설, 장애인단체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도 모두 '기업과 인권' 이슈에 포함이 됩니다.

장애인단체 스스로도 단체 활동의 영향권에 속하는 근로자 등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민단체 관점에서는 장애인 관련 공공기관은 물론 모든 기업들이 경영과 비즈니스 관행이 모든 이해관계자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공공기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편리한 웹·모바일 세상을 꿈꾸는 IT 사회적기업 웹와치

웹와치(주)는 모두가 편리한 웹·모바일 세상을 꿈꾸는 IT분야 최초의 사회적기업으로서, 웹사이트의 장애인 접근성을 심사 평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입니다.

웹와치(주)는 웹 접근성 진단 방법과 지표, 평가와 자동평가 보고서 등을 꾸준히 개발해왔으며, 웹 접근성 자동진단 도구인 Watch 1.0을 개발하여 프로그램 등록하고, 웹 접근성 상시 모니터링 서비스인 WMS를 특허등록 하였으며, 모바일 접근성 원격 진단 솔루션 MAARES를 개발하여 특허출원 하는 등 접근성 분야 기술선도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웹 와치 주요 사업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공인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이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보장한 웹사이트에 대해 인증하고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A진단·컨설팅 / 품질인증 Mobile App Accessibility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진단·컨설팅과 품질인증

* MA 품질인증 대상 : Google Android OS 기반 애플리케이션
Apple IOS 기반 애플리케이션



Mobile Accessibility
모바일 접근성 인증

SA진단·컨설팅 / 품질인증 Software & Solution Accessibility

응용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진단·컨설팅 및 품질인증

* SA 품질인증 대상 : Microsoft Windows OS 기반 소프트웨어
사용자 에이전트 소프트웨어 / 접근성 지원 소프트웨어
웹 브라우저와 연동되는 RIA 소프트웨어 모듈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Software Accessibility
소프트웨어 접근성 인증



VENTURE
벤처인증기업

INNO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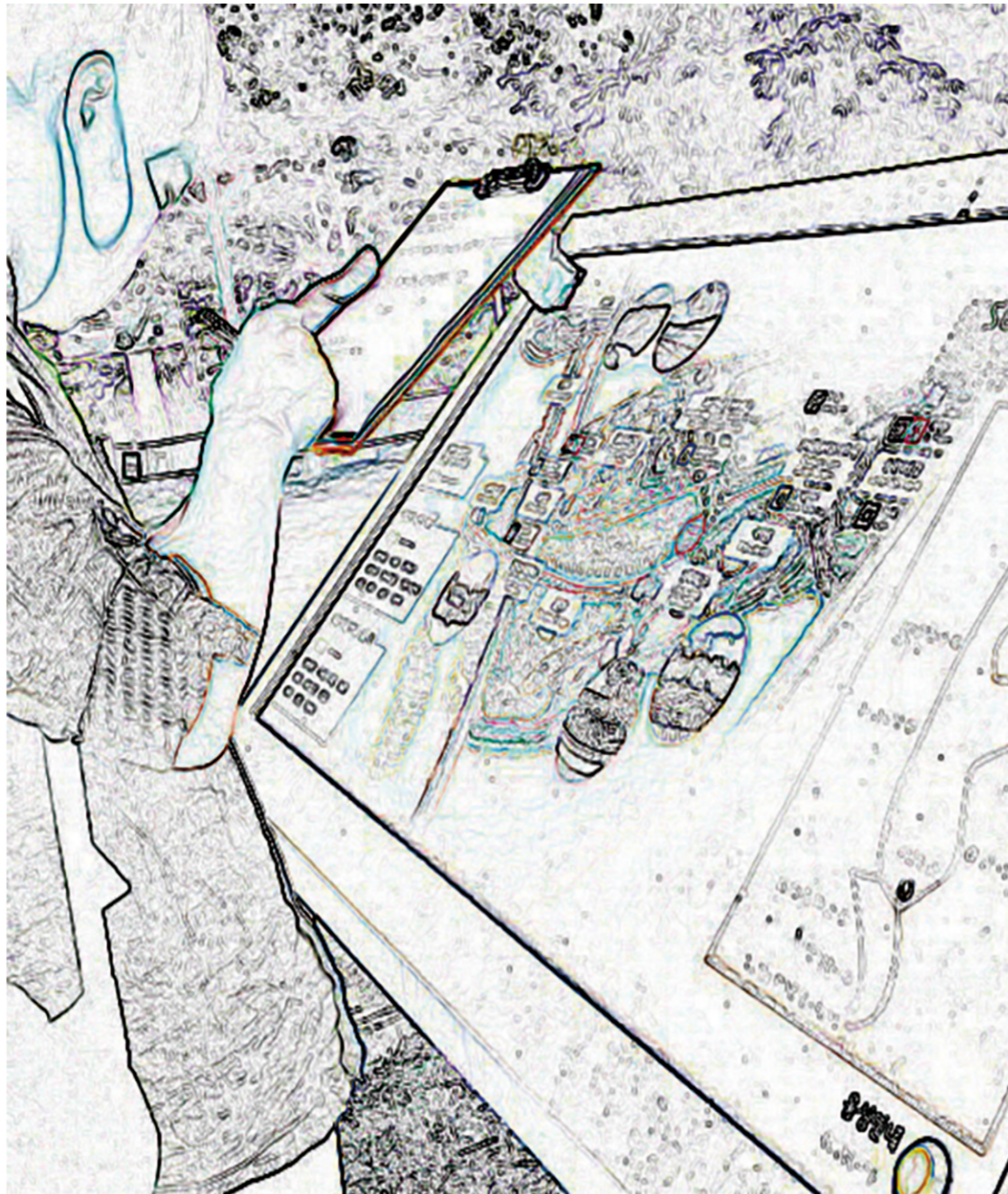


WebWatch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T. (02)2678-0078

E-mail. webwatch@webwatch.or.kr

‘열린’의 의미와 어울리지 않는 열린 관광지 ‘무장애’의 의미와 어울리는 서울 무장애 관광지



‘열린’의 의미와 어울리지 않는 열린 관광지 ‘무장애’의 의미와 어울리는 서울 무장애 관광지

한지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연구원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관광활동의 차별금지도 명시하고 있다. 제24조의2에 따르면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장애인의 관광 참여 시책을 강구하게끔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에서 제20조까지 언급된 시설, 교통,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 접근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의 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이 구축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작 「장애인등편의증진법」에는 모든 관광시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장애인 관광 활동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포괄적이 않고 구체적인 법적 기준 미비로 관광지의 장애인 접근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편의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보니, 열린관광지 정책이 곧바로 장애인 접근성 증진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정책모니터링센터가 2017~2018년에 지정된 열린 관광지 중 8곳을 대상으로 시·청각장애인 모니터단을 운영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청각장애인 접근성은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장애인 관광환경모니터링 선정지

(관광유형 기준 : 대한민국 구석구석(한국관광공사))

번호	연도	지역	열린 관광지	관광유형
1	2017	정선	삼탄아트마인	이색체험
2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기타(산업관광지)
3		고령	대가야 역사테마관광지	관광단지
4		양평	세미원	수목원
5	2018	아산	외암민속마을	민속마을
6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온천	해수욕장
7		장흥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자연생태
8		여수	해양공원	공원

현재 「장애인등편의증진법」에서 관광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공중 화장실과 일부의 생활근린시설일 뿐이다. 열린 관광지를 조사한 결과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관광시설은 법적 기준에서 제외되어 있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또 일부 법적 기준이 적용되어 편의시설은 있지만 설치 및 관리가 미흡했다. 관광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접근성 척도로 점수화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3점은 ‘적정’ 수준으로 시청각장애인이 아무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2~2.9점은 ‘보통’ 수준으로 조력자의 도움이 있으면 관광활동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1~1.9점은 ‘미흡’, 0~0.9점은 ‘없음’으로 편의시설이 아예 없거나 설치되어 있으나 조력자의 도움이 있더라도 장애인 관광활동이 불가능한 수준을 의미한다.

열린관광지 관광환경 모니터링 조사결과

연번	열린 관광지	사전 정보	물리적 접근성	관광 안내소	출입구	안내판	이동로	화장실	음식 판매	체험 이용	평균
1	삼례문화예술촌	0.5	2.1	1.8	1.8	0.8	1.4	0.9	0.5	0.1	1.1
2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0.7	2.2	1.1	0.8	0.5	0.7	0.0	0.0	1.5	0.8

3	해운대해수욕장	0.0	1.8	0.4	0.3	0.3	1.1	0.8	0.0	0.0	0.5
4	해양공원	0.6	3.0	1.0	1.0	0.5	0.7	0.8	0.0	0.4	0.9
5	세미원	0.6	2.1	1.3	0.5	0.5	1.0	0.9	0.0	1.0	0.9
6	외암마을	0.3	2.0	1.4	0.0	0.5	0.3	0.1	0.0	1.5	0.7
7	대가야 역사테마관광지	0.4	2.1	0.9	0.5	0.5	0.7	0.5	0.0	0.4	0.7
8	삼탄아트마인	0.6	1.4	0.6	2.0	0.5	1.9	1.6	0.1	0.8	1.1
평균		0.5	2.1	1.0	0.8	0.5	1.0	0.7	0.1	0.7	

먼저 사전정보를 보면 평균 점수가 0.5점으로 관광지를 안내하는 사이트는 있으나 열린 관광지의 편의시설을 안내하는 곳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열린 관광지 중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2곳은 별도의 관광지 사이트가 아닌 지자체의 관광사이트에 일부 페이지로 소개하고 있다. 나머지 6곳은 별도의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지만 모든 관광지 사이트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를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사이트 내 편의시설에 대한 설명이 아예 없거나 미흡하다. 사이트 내 음성지원이 안되고 8곳 중 2곳에는 관광지를 소개하는 동영상은 있지만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자막이나 수어는 없다.

평균 2.1점으로 평가된 열린 관광지의 물리적 환경은 자동차, 택시를 통한 접근은 용이하여 어려움은 없다. 하지만 교통수단을 이용한 접근은 많이 부족하다. 열린 관광지 2곳은 지방의 특성상 관광지까지 이동하는 버스의 수가 적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은 어렵다. 6곳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이 가능해도 주출입구까지 이동하는 접근로에 안내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접근이 어려운건 마찬가지다. 교통수단에서 하차하여 열린 관광지까지 접근로는 8곳 중 3곳이 인도가 중간에 끊기거나 아예 없어 차도로 이동하여 안전의 문제가 있다. 또 8곳 중 1곳을 제외하고 주출입구까지 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모든 관광지 출입구 앞에 별도의 음성안내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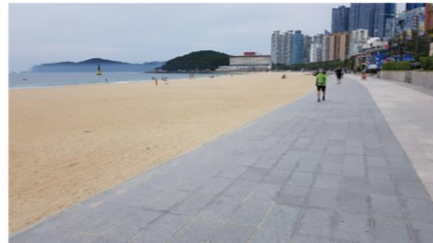
이렇게 관광지에 도착하면 먼저 찾게 되는 곳이 관광안내소이다. 관광안내소는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곳으로 8곳 중 5곳에 별도의 관광안내소가 설치되어 있다. 나머지 3곳은 매표소가 관광안내소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시청각장애인이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기 위해 관광안내소 또는 매표소까지 접근해야 하지만 1곳을 제외하고 유도블록이나 안내시설은 없었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가이드북은 8곳 중 7곳에 미제작, 수량 품질 등의 이유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 안내소에 요청할 수 있는 해설사는 8곳 모두 가능하나 8곳 중 3곳은 관광지 전체 코스 중 일부분만 동행한다. 8곳 중 7곳에는 해설사가 항상 있어 사전 또는 당일에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1곳은 관광지 특성상 상시 지원하는 해설사는 없으며 지자체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수어 해설사는 8곳 모두 없으며, 수어통역센터와 연계도 없다.

열린 관광지 8곳 모두 실외관광지이거나 실내 및 실외를 함께 관광하게 되어 있다.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의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기준에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복도에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유도블록에 대한 언급은 없다. 실외 주요 이동로는 유효폭은 갖춰져 있어 이동에 어려움은 없으나 공간이 넓어 유도블록이 없으면 이동 자체가 어렵다. 열린 관광지 8곳 중 관광지 내 이동로에 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없다. 8곳 중 3곳이 계단, 틈새, 단차 등의 경계가 구분되어 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해운대해수욕장은 이동로에서 해변으로 내려가는 계단 및 단차가 높은 구역이 있지만 경계를 구분하는 바닥재가 사용되지 않았다. 이동로 내 계단, 경사로의 난간에는 1곳을 제외하고 점자가 없다.



〈세미원 출입구〉



〈해운대 해수욕장 이동로〉

마찬가지로 유도 및 안내시설도 매우 미흡하다. 각 열린 관광지마다 점자 안내판은 있지만 점자 안내판 앞 점형블록은 없다. 8곳 모두 관광지 내 점자안내판, 벤치를 안내하는 점형블록은 없으며 화장실까지 안내하는 유도블록 또는 음성안내도 없다. 실내관광지는 공간이 한정적이기에 다소 찾기 수월하지만 실외관광지는 넓기 때문에 유도 및 안내시설이 없으면 편의시설을 찾기 어렵다. 관광지 내 글로 안내되어 있는 유도 및 안내시설도 저시력 장애인에게는 불편할 수 있다.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이동로와 너무 멀거나 글씨가 작아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외암마을 이동로 옆 벤치〉



〈해운대해수욕장 대피안내판〉

관광지에는 안내판 외에도 다양한 전시물, 조형물 등이 있다. 하지만 8곳의 모든 관광지에서 이에 대한 점자 설명은 없다. 여수 해양공원에는 글자를 조형물을 파거나 붙여서 설명하기도 했지만 극히 일부분이다. 촉각으로 글자를 읽는 시각장애인에게는 전시물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그리고 이를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음성안내나 인적지원도 충분하지 않아 관광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



〈여수 해양공원 이순신광장 조형물〉



〈삼례문화예술촌 작품 설명문〉

관광지 중 적용기준이 있는 시설은 화장실이다.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의 공중화장실 기준을 보면 시설 내 1곳 이상에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화장실과 일반화장실이 분리되어 있을 때는 일반화장실 앞에 점자표지판과 점형블록 또는 다른 바닥재질로 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열린 관광지 8곳 중 2곳은 일반 화장실의 앞에 점자표지판 및 다른 재질의 바닥이 없다. 나머지 열린 관광지는 점자 안내판 또는 점형블록이 없는 등 일부 시설이 누락되거나 점자 안내판의 내용이 잘못 기입되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한다.

이는 비상벨도 마찬가지다. 법적 기준은 일반화장실이지만 장애인 화장실에 점자로 표시되어 있는 비상벨이 설치된다. 열린 관광지 8곳 중 3곳은 일반화장실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설치되어 있는 5곳 중 4곳은 점자가 없다. 한 곳은 비상벨은 설치되어 있지만 버튼이 아닌 음성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점자 설명이 없다. 세면대의 수도꼭지에 냉·온수를 점자로 표시해야 하지만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단 한곳뿐이었다.



〈우드랜드 일반화장실입구〉 〈해양공원 하멜전시관 세면대〉 〈외암마을 비상벨〉

비상벨을 포함한 피난 및 비상시설은 관광환경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알고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열린 관광지를 조사하면서 눈에 보이는 피난 및 비상시설은 8곳 중 2곳에 설치된 소화전이 전부였다. 물론 안내방송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안내방송만으로 대피하기에는 어렵다. 청각장애인은 안내방송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비상 사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실외에서는 더 심각하다. 피난 및 비상시설이 없으면 비상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건 시·청각장애인이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니터링 대상 8곳은 열린 관광지 임에도 불구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너무 취약하다. 물론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법적 기준이 없다보니 강제력도 없다.

하지만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24조의2에는 적용된다. 단지 상세하게 정의할 기준이 없을 뿐 장애인을 관광활동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 열린 관광지로 선정되었다면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개선되어야 한다. 최소한의 시설이 개선되어야 장애인이 방문할 수 있고 비로소 열린 관광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른 관광지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의 기준에 적용되는 관광지는 아니지만 장애인에게 관광지 내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좋은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서울 남산 순환 나들길이다. 남산 순환 나들길은 ‘숲길’ 이기에 법적으로는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남산 순환 나들길은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의 설치 기준 중 공원을 기준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무장애코스가 있는 곳은 북측 순환로로 남산케이블카 승강장에서 접근할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케이블카 승강장 인근 정류장에서 내리면 케이블카 승강장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거쳐 북측 순환로 입구까지 유도블록이 설치되어 있다. 북측 순환로 앞 신호등에는 음성안내가 있어 접근이 용이하다. 순환로에 들어가면 동행인이 있거나 혼자 다니는 시각장애인을 여럿 볼 수 있다.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이유는 순환로 입구에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순환로에 들어서면 순환로의 시작부터 유도블록이 도로 가운데로 이어져 있다. 그리고 도로 옆 실계천이 흐르고 있어 경계 구분이 필요한 곳에 왼쪽, 오른쪽 각각 다른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구분했다. 계천이 없는 도로의 양 옆에는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자전거, 자동차 등이 통제되어 안전이 보장된다.

또 남산 순환 나들길에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곳에 적절하게 유도 및 안내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 시·청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화장실에는 유도블록이, 이용이 가능한 벤치, 계단, 점자안내판 앞에는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다. 점자안내판에는 전체구간과 현재구간이 구분되어 있고 별도의 음성지원 버튼은 없지만 시각장애인이 음성안내 리모컨을 사용하면 위치를 안내한다. 심지어 조형물의 설명문 앞에도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다. 설명문은 오로지 점자로만 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설명이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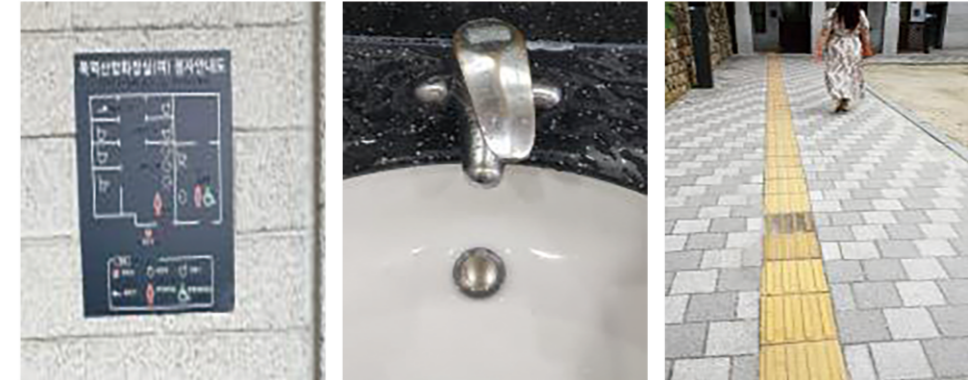


〈남산 순환 나들길 이동로 유도블록 및 양쪽 경계면 다른 바닥재로 표시〉

남산 순환 나들길의 초입에 위치한 화장실도 편의시설이 제공되고 있다. 화장실 앞에 점자안내판과 음성안내가 있어 화장실의 위치를 안내한다. 이동로에서 화장실까지 유도블록이 이어져있고 일반화장실 앞에 점자안내도와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다. 비상벨이 일반화장실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세면대에 점자로 냉·온수 표시가 있다. 구간 중간에 위치한 화장실은 초입의 화장실과 같은 시설은 없지만, 화장실에 접근하면 음성안내가 있어 위치를 알 수 있다.



〈주요 이동로 점자안내판〉 〈이동로 내 벤치·점자안내판 등을 안내하는 점형블록〉



〈일반화장실 앞 점자안내도〉 〈일반화장실 세면대〉 〈화장실 유도블록〉

편의시설의 좋은 예가 남산 순환 나들길이라면 관광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강구한 좋은 예는 경복궁이다. 경복궁은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유산으로 현대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기에 편의시설 설치가 어렵지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가옥의 특성상 건물 사이의 턱과 통행로의 단차가 있다. 이를 제거할 수 없지만, 경복궁은 나무로 된 경사로를 설치하여 턱 등을 제거하지 않고 경관을 해치지 않으며 누구나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



〈경복궁 내 통로〉

또 인적 지원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기를 통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해설 신청이 가능하며 문화해설사의 동행 없이 관광할 때는 안내해설기기가 있어 설명문의 글씨가 작아 잘 보이지 않는 저시력 장애인에게 유용하다.

남산 순환 나들길과 경복궁도 편의시설의 단점은 있다. 남산 순환 나들길은 중간중간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휠체어 장애인은 지원 없이 이동이 어렵고 경복궁은 현대적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적 지원 없이는 관광을 할 수 없다. 편의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한계도 있고 법적 기준도 없다. 하지만 장애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지와 지자체가 편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밀도, 많은 여행객 등 지역상 특징도 있겠지만 현대인들은 관광지가 좋고 관광환경이 좋다면 도시든 지방이든 관광하기 위해 방문한다. 열린 관광지도 마찬가지다. 법적 기준이 아니라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생각이 차이를 만든다. 남산과 경복궁은 법적 기준이 없지만 관광지와 지자체 모두 편의시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다수의 관광지나 지자체에서는 법적 기준을 방패로 편의시설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다.

시·청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이 관광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관광지나 지자체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 개선이 기본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게 맞다. 법이 개선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국토부 등 많은 부처 간 협력과 장애인 단체,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협력과 소통을 통해 관광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필요한 편의시설을 결정하여 기준을 정해야 관광시설도 법적 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법적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열린 관광지와 지자체도 손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 시각장애인이 열린 관광지 편의시설에 접근이 어렵고 청각장애인이 비상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건 일반 관광지도 마찬가지다. 열린 관광지로 선정되어 받은 지원금으로 편의시설을 일부 설치한 상태에서 2,3년 동안 관리도, 개선도 없는 관광지는 열린 관광지라 할 수 없다. 지자체도 지역의 관광지가 열린 관광지로 선정되었다면 해당 관광지와 함께 지역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열린 관광지만 보러 오지 않는다. 관광지를 중심으로 교통, 숙박, 음식점 등이 구축되어야 한다. 법적 기준이 없다고 해서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관광환경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열린 관광지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장애인 관광환경 모니터링사업



I

- 2017년, 2018년 열린관광지 중 대상지를 선정하여 시·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체크리스트 구성 및 모니터링 기준 수립

II

- 장애인의 관광 접근권 및 관광활동 차별금지 준수 실태를 모니터링하여 열린관광지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 구축

III

- 관광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정보제공(모니터링 리포트,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개선 방안 제시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정책 모니터링 실태에 대한 소고

한동국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선임연구원

소재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장애인 정책을 감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궁극적으로 지역 장애인의 삶을 개선하는 활동은 지역 밀착형 장애인 단체가 수행하는 일상 업무가 되었다. 반대로 장애인정책 모니터링 원칙과 방법에 대한 교육이 점진적으로 확산되면서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센터') 모니터링 대상은 점점 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로 축소되고 있다. 센터가 2000년대 후반부터 지역 IL센터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교육을 제공하면서, 지역기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IL센터') 모니터링 활동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유를 떠나 IL센터가 소재하는 지역의 정책을 감시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이고 단체 설립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한다.

센터가 제공하는 교육의 주 내용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장애인정책 예산, 장애인관련 자치법규 모니터링에 대한 기준과 방법이다. 오랜 기간 쌓여온 경험으로 축적된 센터의 모니터링 역량은 전국 장애인단체 모니터링 방법의 표준화로 이어졌다. 하지만 IL센터 모니터링 사업을 지원하면서 공통적으로 접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모니터링 절차의 타당성 문제다. 모니터링 방법 교육에 앞서 센터는 모니터링 절차의 타당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모니터링 절차의 타당성 확보

〈1단계 - 분야별 지역 장애인 복지 현안 파악〉 지역 장애인단체가 모니터링 사업을 하면서 흔히 간과하는 절차라 할 수 있다. 모니터링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린 경우가 대표적이다. 기획단계에서 지역 장애인 복지 현안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야 모니터링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모니터링 기획단계에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정책을 분

야별로 나누고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집행기관과 의회, 지역사회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현안 및 문제점 파악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해관계자들이 진단하는 분야별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도출하기 위함이다.

모니터링 절차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주요내용	• 현안 파악	• 모니터링	• 환류 & 개선	• 성과추적 & 모니터링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 설정 • 분야별 현안 파악 & 분석 (간담회) • 개선방안 및 조치 도출 • 조치이행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단 실무 교육 • 자료 발취 • 분류 & 분석 • 실태 파악 & 필요조치 사이의 간극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분석 결과 공유 (간담회) • 개선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조치 성과 추적 & 효과성 모니터링

〈2단계 - 모니터링 수행〉 1단계 절차를 간과하다보니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모니터링을 수행할 뿐, 지역별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 1단계에서 지역 장애인 경제활동이 타 지역에 비해 저조하고, 학대 피해 장애인 보호 조치가 부족하다고 파악이 되었다면, 모니터링 과정은 물론 결과분석 단계에서 관련 의정발언과 자치법규, 예산 분석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의정활동에서는 해당 이슈를 중요하게 다루고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한다. 관련 조례의 제·개정 노력은 하고 있는 지, 해당 분야 예산은 충분하게 편성하고 있는 지 파악할 수 있는 차별화된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보니 자료수집과 분류, 분석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자료의 단순 나열식에 그치는 경우를 흔히 접한다. 모니터링 결과물을 평가할 기준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3단계 - 환류 & 개선〉 모니터링 결과의 활용 단계다.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구하고, 기초단체와 지방의회를 움직이려면 개선을 요구하는 근거

가 명확해야 한다. 모니터링 사업이 어떻게 결실을 맺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개선요구 시 강조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선 요구 시 주요 강조사항

구분	세부내용
강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장애인(가족), 관련 종사자 삶에 직접적·즉각적·심각하게 미치는 부정적 인권 영향 부정적인 영향의 구체적 내용 인권위험이 나타나는 사업 활동 주기 또는 단계 조치가 지연될 경우 지자체 및 장애인 등 관련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즉각적 조치와 실태조사 또는 추가 모니터링을 요하는 사항 개선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4단계 - 성과추적 & 모니터링〉 모니터링 사업이 분절적인 경우가 많다. 해당연도 모니터링은 전년도에 제시했던 개선 요구 사항이 실제로 이행이 되고 있는 지, 그 효과성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후속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주체의 인권증진 성과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다. 우선 개선 조치 수립과 이행여부를 파악하고 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조치 이행의 효과성 평가 절차에는 장애인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 정도, 개선조치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친 긍정적 영향, 부작용과 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외부 평가를 고려해야 한다. 이 절차는 자치단체 및 의회의 참여와 협력 유도에도 매우 유용하다.

사업 환경

모니터링 교육 의뢰 문서를 받아보면 모니터링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허다하다. 교육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의뢰기관의 모니터링의 목적에 따라 그 대상과 범위, 방법을 정리해 모니터링 실무교육을 제공해야 하는데, 정착 현장에서는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에 대한 교육만 하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보니 모니터링을 마치고 난 후 다시 분석을 요청해온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

으로 기본적인 분류 및 통계작업이 끝나면, 계량화된 정보로 생각지 못한 문제점을 파악하게 된 경우도 더러 있다. 그건 목적과 관계없는 얻어걸린 성과나 다름없다. 설문조사로 예를 들면, 설문 목적도 없이 설문문항을 설계하고 설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찾는 격이다. 앞서 언급한 문제는 2단계, 3단계, 4단계 절차가 방향을 잃어버린 결과로 이어진다. 더 나아가 2단계를 목적으로 인식하다보니 3,4단계를 생략하는 경우도 흔하다.

사업추진 관행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해당연도 사업을 전년도에 준비하고 기획하는 관행이 정립되지 않아서다. 사업비를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이유일 것이다. 해당연도에 사업을 선정하는 지원기관 관행의 영향일 수도 있다. 즉 전년도에 미리 사업내용과 예산을 확정할 수 있는 지원기관과 그렇지 못한 기관 간의 생략적 차이다. 쉽게 말해 예측가능성이 없어, 긴박하게 준비되고 연말이 되어서야 겨우 사업을 마치는 악습이 반복되는 경우다. 예측이 안 되니 당달아 담당인력이 경험과 역량을 축적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다. 이는 사업성과 축적에도 부정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사업비 안에 책정된 인건비는 늘 실 인건비에 비해 적다. 중국에는 사람은 적고 일은 많은 상황이 반복되고 사업의 완성도를 보장하지 못한다. 공익활동 지원체계의 개선이 요구되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환경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요구받고 있으며, 주어진 환경을 이유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모니터링 담당자가 여유를 갖고 깊이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비단 모니터링 사업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또한 모니터링 교육을 기획단계 또는 그 이전에 시행하는 것이 모니터링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원고는 올해 상반기에 작성된 것으로, 필자인 한동국 당시 센터 선임연구원은 현재 시흥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단에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엠마 왓슨

톰 행크스

24시간

라이브되는

당신의

모든 것

가장 투명하고 완벽한 세상

더서클

EUROCORP AND IMAGE NATION ABU DHABI
PRESENT IN ASSOCIATION WITH IM GLOBAL AND PARKES + MACDONALD PRODUCTIONS AND ROUTE ONE ENTERTAINMENT
A PEAYTONE / LIKELY STORY / 1978 FILMS PRODUCTION EMMA WATSON TOM HANKS "THE CIRCLE" JOHN BOYEGA KAREN GILLAN ELLAR COLTRANE PATTON OSWALT
GLENNIE HEADLY AND BILL PAXTON CASTING BY AMY KAUFMAN CSA MUSIC SUPERVISOR TIFFANY ANDERS MUSIC BY DANNY ELFMAN COSTUME DESIGNER EMMA POTTER EDITOR LISA LASSEK
PRODUCTION DESIGNER GERALD SULLIVAN DIRECTOR OF PHOTOGRAPHY MATTHEW LIBATROU, ASC EXECUTIVE PRODUCERS STEFANE AZRABU RON SCHMIDT SALLY WILLOX STEVEN SHARISHIAN
EVAN HAYES PETER CRON MARC SHMUGER FEDERICA SAINTE-ROSE RUSSELL LEVINE PRODUCED BY GARY GOETZMAN ANTHONY BREGMAN JAMES PONSOLDT
BASED ON THE NOVEL BY DAVE EGGERS SCREENPLAY BY JAMES PONSOLDT AND DAVE EGGERS DIRECTED BY JAMES PONSOLDT

12세 이상 관람가

2017.06

이미지 단상
포커스 2

편집자 편지

이슈포착 1
영화평

이슈포착 2
포럼은 지금

포커스 1

장애의 효용 : 엠마 왓슨 주연의 SF영화 <더 서클>

류미레 푸른영상, 독립영화 감독

SNS의 발달로 지구 반대편에서도 실시간으로 타인의 생활을 관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런 지금을 아주 시의적절하게 그려내고 있는 영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엠마 왓슨 주연의 SF영화 <더 서클>입니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잊혀질 권리'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잊혀질 권리'란 개인이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자신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사실 '잊혀질 권리'가 실현이 안 되고 있는 시대라서 영화의 메시지가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더 서클>의 주인공 메이는 모두가 선망하는 신의 직장이자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기업, 서클에 입사하게 됩니다. 메이는 서클의 대표 에이몬의 철학에 매료되는데 전 세계 2억 명에게 24시간 자신을 생중계하는 프로그램에 자원하면서 sns 스타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메이의 선택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되고 개발자 '타이'는 메이를 찾아가 서클이 감추고 있는 시스템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더 서클>은 동명의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합니다. 영화 제작 전부터 이미 그 화제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연출을 맡은 제임스 폰솔트 감독은 원작 속 인물을 스크린으로 완벽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책임자를 찾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해요. 긴 탐색 끝에 메이 역할은 엠마 왓슨이, 에이몬 역할은 톰 행크스가 맡게 됩니다. 엠마 왓슨은 제임스 폰솔트 감독이, 톰 행크스는 원작자가 간절히 원했다고 해요. 톰 행크스를 선택한 이유가 재미있는데요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누구에게나 믿을 수 있는 배우'가 필요했고 1순위가 톰 행크스였다고 합니다. 톰 행크스는 <포레스트 검프>를 비롯한 다양한 화제작들의 주인공이라 우리에게도 익숙하지요. 그리고 원작자가 선택했던 그 이유와 효과를 십분 발휘합니다. 영화 안에서든 영화 바깥에서든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발언들을 종종 해왔던 톰 행크스, 즉 에이

문의 존재감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장애에 대한 태도에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영화이야기와 함께 좀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죠

영화는 무척 재미있어요.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고 영화 속 회사의 이름이기도 한 <더 서클>을 보면 얼른 구글이 떠오르는데요 그만큼 꿈의 직장, 신의 직장입니다. 메이는 비정규직 전화상담원으로 일을 하다가 더서클에 다니고 있는 친구의 소개로 지원을 하게 돼요. 면접장면이 아주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창의적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질문들인데 메이는 그 관문을 잘 통과합니다.

비정규직 전화상담원에서 모두가 꿈꾸는 글로벌 기업의 구성원이 된 메이의 성공을 부모님은 기뻐합니다. 아빠가 장애를 갖고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아빠는 다발성 경화증때문에 몸이 점점 마비되어가고 있는데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 보험회사로부터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웃들과의 파티 장면에서 메이의 상황은 더 또렷하게 이해됩니다. 취직 축하와 앞으로의 성공을 기원하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엄마 아빠의 표정이 바뀝니다. 아빠가 앉은 자리에서 소변을 보고 만 것입니다. 자존감은 여전히 높는데 다발성 경화증으로 몸이 점점 말을 듣지 않은 상황 때문에 아빠가 수치스러워하는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SF영화들은 관객들에게 미래의 풍경을 보여줌으로써 재미를 더하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획기적인 신기술로 씨체인지 카메라가 등장합니다. 별도 전원 없이 어디에든 설치할 수 있는 이 카메라는 초고화질로 해당 장소의 정보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씨체인지 카메라의 발명으로 '더 서클' 가입자들, 일명 서클러들은 방 안에 앉아서 지구 반대편 풍경까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사람의 안방까지도 볼 수 있는 초강력 CCTV가 탄생한 것입니다. CCTV와 '개인의 사생활보호'는 늘 대립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장애를 전면에 등장시킴으로써 이 대립을 무화시킵니다.

CEO 에이몬의 아들 거너는 선천성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풍족한 부를 소유했지만 걷지도, 뛰지도, 카약을 타지도 못합니다. 특별히 카약이 언급되는

이유는 메이의 취미가 카약이기 때문이에요. 카약을 타다가 물에 빠진 메이가 씨체인지 카메라 덕분에 목숨을 구한 사건이 있고 난 후, 에이몬은 신기술 발표회에서 아들 얘기를 꺼냅니다. 평생 휠체어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너가 서클을 통해 간접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서클러가 케냐산을 등반하면 거너 또한 케냐산을 오르는 기분을 느낄 수 있고, 요트대회 출전 선수의 1인칭 시점의 영상을 보면서 거너 또한 요트를 타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제 아들과 같은 이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들에게 경험을 뺏는 게 정당합니까?”

씨체인지 카메라의 광범위한 보급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소리를 에이몬은 장애인 아들을 내세움으로써 가볍게 잠재웁니다. 더 나아가서 메이는 “모든 경험을 누리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씨체인지 카메라를 늘 착용함으로써 서클러 최초로 직장생활을 포함한 사생활 전부를 공개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제 전 세계 2억 명이 넘는 서클러들이 메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곧 메이는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메이의 주변인들까지 사생활이 없게 되어버리거든요. 어디에든 씨체인지 카메라가 붙어있어서 메이가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은 상대방까지 화면에 등장하는 방식으로 중계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에게 전화를 한 어느 날, 엄마와 아빠는 침실에서 부부관계를 하는 이었고 잠깐이었지만 그 장면은 전 세계로 퍼져버립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에 이어 어렸을 때부터의 친구인 머서까지 서클러들의 집요한 추적 때문에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에이몬은 자식의 장애를 방패삼아 씨체인지 카메라의 정당성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에이몬에 설득되어 씨체인지 카메라의 홍보대사처럼 활동하던 메이는 결국 사생활 노출로 많은 것들을 잃습니다. 많은 것을 잃고 나서 메이는 모



든 것을 바로 잡겠다고 나서는 데요 메이의 반격을 지켜보는 일이 흥미진진하지요.

에이몬은 자식의 장애를 앞세워 ‘비밀을 공유하자’ 는 주장을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사생활은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선청성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아들 거너는 얼굴 한 번 나오지 않지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소위 사회가 약자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기아 난민들이나 빈민아동들이 출연하는 광고들을 본 적이 있으시지요? 하루에도 몇 번씩 TV에 등장하는 이 공익광고들은 자극적인 편집으로 감정의 변화를 유도합니다. 결국 그 처참함에 마음이 아파 지갑을 열게 되지요. 이런 광고들을 빈곤 포르노라 부릅니다. 대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약자들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측면에서 에이몬의 시도는 빈곤 포르노의 방식과 무척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부모라는 자리를 내세우며 자신의 처지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기업의 시도들을 공익을 위한 것으로 치장하지요.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사생활을 노출시켜야하는 순간, 에이몬은 “망했다” 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누구에게나 믿을 수 있는 배우’ 톰 행크스의 얼굴을 하고 에이몬이 대중들에게 각인시킨 신뢰의 이미지가 그렇게 깨져나갈 때 저는 갑자기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빈곤포르노 생각이 나더라구요. 그리고 약자들의 어려움을 방패삼아 이뤄지는 다양한 시도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 개봉했던 이 영화는 여전히 유의미합니다. sns의 발달과 사생활, 정보공개와 인권, 이렇게 여전히 지금도 중요한 논점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영화입니다. 묵직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으면서도 전혀 무겁지 않고 재미있고 최첨단 기술을 맛보는 재미도 큰 이 영화, 꼭 한 번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포럼은 지금

6 포럼은 지금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제15회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 1차 작품 접수를 진행했다. 중·고등부에서 31개, 대학·일반부에서 287개로 총 318개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1차 심사는 차별성, 유니버설디자인의 취지, 유니버설디자인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심사했으며, 총 142개의 작품이 2차 심사에 진출했다. 10월 7일부터는 2차 심사를 진행했다. 각 분야별 평가기준은 독창성, 완성도, 안전성, 실용성 등이다. 2차 심사 진행 후 예비수상작의 표절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수상작이 결정되며, 수상하는 개인 또는 팀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금이 수여된다.


또 1회부터 전년도까지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제품 디자인 일부는 3D 프린터를 통해 시제품으로 제작된다. 현재 5개 제품이 제작 중이며, 완성된 제품은 작품 설명서와 함께 전시회를 통해 공개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전시회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전시방법은 논의 중에 있다. 전시회 일정은 추후 공모전 홈페이지(www.udcontest.com)에 공지될 예정이다.



전북장애인인권포럼

전북장애인인권포럼은 직원 및 강사 1인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북장애인인권포럼은 전주시 인권위원 및 전주시 바람길 조성사업 위원으로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전주시 바람길 조성사업은 산림청의 지원으로 대구보다 심각한 전주의 열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백제로에 나무를 심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설계에 포함되어야 하며, 장애인 및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고 불편하지 않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하고 있다.

이 책자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지역모니터링센터

- 서울(대표 이권희) T 02-833-3097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이앤씨드림타워 1303호
- 부산(대표 김호상) T 051-582-3234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675 우신빌딩 2층
- 대전(대표 안승서) T 042-286-0036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176번지 15-4 동진프라자 332호
- 광주(대표 김 랑) T 062-673-0420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앙로 131번길 17
- 울산(대표 성현정) T 052-289-1254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로 73 세한빌딩 5층
- 경기(대표 안미선) T 031-906-309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4, 남정시티프라자 806호
- 경남(대표 문숙현) T 055-283-1313 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월로 42 토월복합상가 303호
- 전북(대표 김미아) T 063-228-1989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만내 4길 6-23
- 충남(대표 박종균) T 041-631-0691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47번길 새아스프라자 501호
- 제주(대표 김성완) T 064-751-8096 제주도 제주시 천수동로 30, 201호